

공고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제 214	(결 과 번 호)	공고제 83호	권력규정	13조 12항
처리기간		결	결	결	결
시행일자	71.4.21	결	결	결	결
보존년한		결	결	결	결
보조 기 관	라수리장 행성시장 처리시장	71.4.20	법무부장 (공공안결재) 시민리장		
기안책임자					
경유 수신 참조	각안 참조	발 신		공 제	검 인 71.4.21 서울특별시 공공부
제 목	새 땅 공 고				
제 1 안 내역결재.					
1. 건설부고시 제 2286호 (66.3.28)로 사출등록된 도시 계획사업으로 인가고시되어 70.6.5 쪽공의 장미전 라수처리장 구역 내의 미개발 용지 및 지장물 (시민병충구터 (2.3필) 에 대하여 1970.5.8 당시 시유재산 산의 회에서 결정된 용지매입가액에 의거 그동안 수차에 걸쳐 용지 소유자 에게 매매강의 용지 및 매매 준공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응응하고 있음.					
2. 따라서 47기 일처리장 공신 결현상 미개발 용지 및 지장물 에 대하여, 부응하 아를 수용하고리 도시계					

0201-1-1A
1999. 11. 10. 승인

190mm x 268mm 백 상 지 50g/cm²
(서울특별시청 청정 직언보도권 인쇄)

제 2 조의 규정이 되기 이전과 같이 세목 공표권과
 하여서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조 안

양행기
 1. 4. 22 82 제

서울특별시 공표권 제
 건설부고시 제 2286호 (66. 3. 28)로 고시된 당시 보
 시 계획사업인 정제천 하수처리장 건설구역에 현행의 미
 배수 설치 및 지장물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2항
 에 다음과 같이 세목을 공표합니다

- 의해
1. 사업명 : 정제천 하수처리장 건설
 2. 재산의 표시 : 별지 조서와 같음.
 3. 공표기간 : 1971. 4. 23. ~ 1971. 5. 23.
 (10일간)

1971. 4. 23.
 서울특별시 양행기

제 3 조 안
 수선, 수선제 참조.
 제 목, 세목 공표

건설부고시 제 2286호 (66. 3. 28)로 고시되어 기
 6. 5 항목인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정제천 하수처리장 건설
 구역에 적용되는 설치 및 지장물을 수공로에 도시계획법 제
 12 조의 규정이 되기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기 특히 합니다

- ~~1. 사업명 : 정제천 하수처리장 건설~~
1. 수공로 재산의 표시 : 별지 조서와 같음
 2. 공표장소 : 시청 게시판
 3. 공표기간 : 1971. 4. 23. ~ 1971. 5. 23. (10일간)

수선제, 별첨 조서의 소유권

제 4 안

수신. 공보심감

발신. 건설국감.

제목. 시보 게재 의회.

1. 별첨 제안이 의하여 정미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양사가 수용권처하는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이 이기 이종 공인하였기 총리 라보이 시보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용공고문 사본 1부

나. 제안도서 1부

제 5 안.

수신. 건설부장관

제목. 수용공고 결과 보고.

건설부 2시 제 2286호 (66. 3. 20) 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 ~~제 2286호~~ (정미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계획}인가 되어 20. 6. 5 착공한 정미하수처리장 구역 내의 ~~이~~ 매입 용지 및 지장물 (세면병용 주택 193호) 이 대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쳐 토지 소유자에게 매입 용지 총리 및 ~~이~~ 동용 하였으나 현재 까지 이에 복응 하진 않았으므로 부득히 이를 수용표지 별첨한 같이 시공 공중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첨부. 1. 수용공고 사본 2부

2. 토지 표시 2부

3. 지적도 2부 끝

건설부 고시 제 2256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계천 마수저미장 건설) 사업 실시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6 조 및 동 시행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함.

1966. 3. 28.

건설부장관 권여용

다
음

1. 사업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계천 마수저미장~~행~~설사업)
2. 계획자 서울특별시장
3. 시행지구 서울특별시성동구 장안평근자동, 송정동 일부
4. 시행목표 1 일 250,000 의 마수저미
5. 시행기간 자 1966년 3월 28일
차 1970년12월 31일

관계도면을 서울특별시장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5-4

64

도 지 로 서

자산의 소재	종류 또는 지목	평수	평당 단가	소유자명
성동구 근 자동 205-835	답	12	2,000	성동구 와양동 132 정기천
송정동 74-232	"	0	2,000	산정동 70-80 이기영
" 74-298	"	0.5	2,000	"
" " 74-32	"	3	2,000	" 송정동 74-205 김봉백
" " 74-205	"	780	2,000	" " "
" " 74-191	"	137	2,000	" " "
" " 74-206	"	308	2,000	" " "
" " 74-207	"	205	2,000	" " "
" " 74-205	주 역	19 ³³	16,000	" " "